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29
------	------

2012. 10. 8.  
재정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성수 IT 산업진흥개발진흥지구 성수 IT 종합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의하여 서울  
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중인 사무로

- 본 사업은 시행초기로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타  
기관 위탁 또는 이관시 혼선초래가 예상되고, 성수 IT 산업개발진흥  
지구 활성화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성수 IT 종합센터를 기 운영해  
오던 SBA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 및 업무의 연속성이 필  
요한 바,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  
위탁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 2. 위탁주요내용

- 시설현황 : 성동구 성수2가 22길 37 아크밸리  
(아크밸리 건물 지하1층, 지상1~6층, 14층, 9,909.35㎡)
- 위탁기간 : 2년6개월(2013. 1. 1 ~ 2015. 6. 28)
- 위탁업무
  - 유기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에 특화된 성공 모델 창출
- 센터 입주관리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 2013년 예산(안) : 1,100백만원
- 선정방법 : SBA와 재계약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내 앵커시설인 ‘성수IT 종합센터’(이하 “센터”)의 운영과 기업지원 사무를 개관 이후 해당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중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과 재계약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센터 조성 및 운영개요

- 서울시(이하 “시”)는 기존의 산업기반이 공동주택 등의 확장으로 붕괴되고 산업시설 기반이 노후화됨에 따라 시의 산업임지 공간 회복,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시는 종로(귀금속), 중구(금융), 성수(IT) 등 6개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를 지정하였으며, 동대문(약령시), 중

랑(패션)을 비롯한 6개 지구도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음.

- 센터는 성수IT 지구의 핵심 앵커시설로 2011년 개관 이후 IT, BT, R&D관련 중소기업 31개사를 입주시켜 해당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추진 배경: 기존 서울의 산업기반이 공동주택 등에 잠식되고, 규제중심의 산업입지 정책으로 산업기반 시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서울의 산업입지 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임.

※ 서울지역 준공업지역 면적변화 : '66년 87.4km<sup>2</sup> → '86년 30.9km<sup>2</sup> → '09년 27.7km<sup>2</sup>

▷ 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중 '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

▷ 관련 절차: 대상지 신청(자치구) ⇒ 대상지 선정(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회) ⇒ 지구지정 결정고시(市 도시계획위원회) ⇒ 진흥계획 수립·승인 ⇒ 진흥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인센티브 내역: (당초 계획)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 완화 :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완화(지구단위계획 승인 필요)
- 세금감면 : 취득세 50% 감면 및 재산세 5년간 50% 경감(시 감면조례 개정 필요)
- 자금융자 :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자 및 영세기업 등에 자금융자
- 시비지원 : 앵커시설(종합지원센터) 설치, 기반시설 공급·확충 등

▷ 추진현황

1차 6개 지구 지정('10.1월)	여의도(금융), 종로(귀금속), 성수(IT), 서초(R&D), 마포(디자인), 중구(금융)
2차 6개 대상지 선정('10.6월)	중구(디자인), 동대문(한방), 강남(디자인), 중구(인쇄), 중랑(패션), 마포(웨딩)

- 현재 성동구 성수2가 아크밸리내 시설 일부(9,909.35m<sup>2</sup>)를 임대해 운영중인 센터는 창업 후 5년 미만의 IT관련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2년의 입주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료 혜택과 함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술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성화와 해당 지역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판단

- 센터는 시가 2010년 성수지구를 제1차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후 앵커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2011년 7월 개관 이후 IT기업 28개, BT 기업 2개, R&D기업 1개사 등 모두 31개 기업이 입주해 있음.
- 개관 준비 단계에서 센터관리와 입주기업 선정,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중인 SBA는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인력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제품개발·사업화·투자유치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IT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업 운영의 전(全)단계에 걸쳐 기업의 수요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임.
- SBA는 시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현재에도 여러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센터의 개관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시설과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적합성과 센터 운영의 연속성에서 장점이 인정되며,

-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분야에서 평균 78.78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보이고 있음<sup>1)</sup>.
-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과 지역의 사정에 따른 능동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자치구가 위임받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나 자치구가 재정여건과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최초 위탁시 SBA단독 응찰 사례에서 보듯 현재와 같이 위탁 수수료 없이 인건비만 부담하는 사업 형태로는 다른 위탁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향후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경쟁활성화에 따른 편익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를 비교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2012. 8 「성수IT 종합센터 경영평가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29
----------	------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성수IT 종합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의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중('11.2.14~'12.12.31)인 사무로서,
- 본 사업은 시행초기로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타기관 위탁 또는 이관시 혼선초래가 예상되고,
-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성수IT 종합센터를 기 운영해 오던 SBA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 및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 성동구 성수2가 22길 37 아크밸리 9,909.35 $m^2$   
(아크밸리 건물 지하1층, 지상1~6층, 14층)
- 위탁기간 : 2013.1.1~2015.6.28(2년6개월)  
※ 센터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 : '10.6.29~'15.6.28

- 수행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 이진영)
- 선정방법 : 현재 수탁운영 중인 SBA와 재계약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13년도 예정)

※ '12년 1,322백만원

○ 위탁 주요 업무

- 유기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산학연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지원
  - 기업 진단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특화된 성공 모델 창출
  - 관내 전통산업과 IT 기술융합을 통한 첨단산업화
  - 선택과 집중의 스타기업 육성을 통해 조기 성공모델 창출
- 센터 입주관리 및 조사연구 기능 강화
  - 입주사무실 및 공용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 조사연구 및 통계 분석, 기획 기능 강화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위탁협약(1차) : 서울산업통상진흥원('11.2.14 ~'12.12.31)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성수IT 종합센터가 '11.5월 개관하여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타기관 또는 자치구에 재위탁·이관할 경우 운영의 혼선초래가 예상되고,
- 재정담당관의 출연기관 업무 재설계에 따라 성수IT 종합센터 운영권의 성동구 이관을 검토하였으나 성동구는 전문성 부족과 운영인력 확보곤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
- 또한 본 사업은 수수료 없이 인건비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현실적으로 수익보전 없이 민간위탁업체를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성수IT 종합센터 경영평가결과도 사업초기의 지역DB 구축작업 등 무난한 준비작업 완료로 지속적인 사업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적합)된바, 그동안 위탁 운영해온 SBA의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본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생략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생략
6. 산업지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생략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 타

-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12.9.14. 경제정책과-11845)